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600 발의연월일: 2023. 4. 24.

발 의 자:이은주・양정숙・장혜영

강민정 • 강은미 • 기동민

김영배 • 류호정 • 배진교

심상정 · 김종민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중앙회장과 상근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나임원뿐만 아니라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규정과 법체계가 조화롭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현재 상근임원이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하고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음.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상근임원과 직원 간 차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또한, 상근직원의 경우 입후보

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운동도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음.

한편, 과거에는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도 금지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따라 선거운동이 허용된 바 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는 당원이 아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이에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5호 중 "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를 "사람"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직원"을 "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자) ①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			
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			
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			
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	5		
第1項第2號 내지 제7호에 해			
당하는 者(제5호 및 제6호의	<u>사람</u>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			
<u>한다)</u>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公務	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員(國會議員과 그 보좌관・선			
임비서관・비서관 및 地方議會			

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 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 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ㆍ리 • 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 부.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 民運動團體로서 國家나 地方自 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 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 ・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 總聯盟을 말한다)의 常勤 任・ 職員 및 이들 團體 등(市・道 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 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략)

② ~ ⑦ (생 략)

<u>임원</u>
·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